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9조의 요약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금액임(자본·출자·환급·잉여금처분 등을 제외함).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실 및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 및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업무관련성있는 통상범위의 수익대응비용)

○동업기업의 결손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

○손금의 구체적 열거 예시내용 : 상품·제품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판매한 상품·제품의 보관료·포장비·운반비·판매장려금 및 부대비용,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인건비, 고정자산수선비, 감가상각비(부당행위계산시 시가미달 고정자산차액의 감가상각비도 해당), 자산임차료, 차입금이자,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자산의 평가차손, 제세공과금, 사업자 조직한 법인단체·등록조합·협회의 회비, 탐광비, 무료진료가액, 무상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 업무관련 해외시찰·훈련비, 특별학급·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운영비,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이나 자사주 장부가액, 기타 법인에 귀속될 제반 금액, 장식용 소액미술품(취득가액 300만원 이하), 연 3만원 이내의 광고선전목적의 기증물품구입비, 주식매수선택권행사비용 보전금액 등의 구입비용

●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Ⅰ. 순자산감소거래로 인한 손비금액 (법 제19조제1항)

1. 손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기준 제34조는 회계기간의 모든 수익에서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적정하게 차감표시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업회계상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을 세법상으로는 손금이라 한다. 기업회계상 수익은 세무상 익금개념이, 기업회계상 비용은 손금개념이 대응된다.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는 손금불산입항목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손금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도시한다.

[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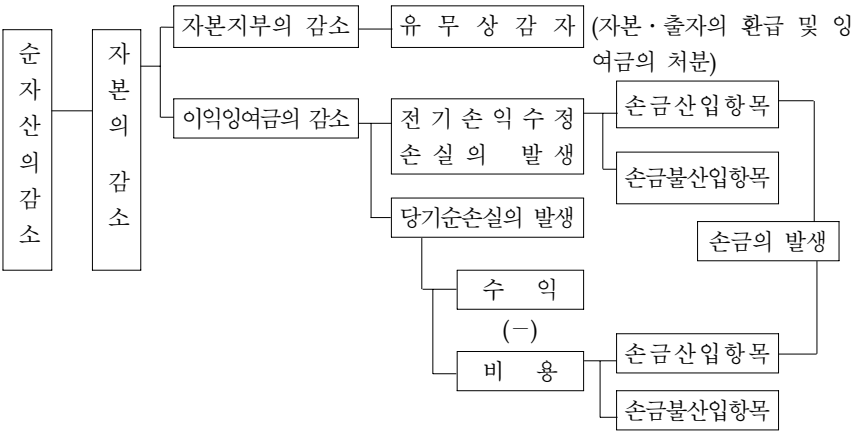

1) 손금과 손비의 개념

① 법인의 순자산감소거래로 인한 손비

본 항은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 감소의 원인행위거래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자산잔액인데, 자산⊖부채의 결과적 개념으로 측정한다.

② 손비 : 기업회계상 비용과 손실의 포괄개념

기업회계상 경영성과를 표시·보고할 경우 수익에서 비용 등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데 비용은 손비·손금·지출·손실 등의 여러 용어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비용(expense)이란 일정기간 동안에 자산의 유출 또는 그밖에 자산을 사용하여 감액시키는 것 또는 부채의 발생(또는 이 두 가지의 결합)을 말한다. 이것은 재화의 전달, 생산, 용역의 제공 또는 그밖의 실체의 중요하고 중심적인 영업활동(operations)을 구성하는 활동(activity)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난다." 또한 "손실(losses)은 실체의 우발적인(incidental) 거래와 일정기간 동안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타의 거래와 사상 및 환경으로부터 나타나는 지분(순자산)의 감소이다. 단, 소유자에의 배분 배당액 간주액은 제외한다"고 본다.

③ 사업과 관련된 지출비용 등의 조정

손금은 손비를 말하며 손비는 손실과 비용의 합성어라 볼 수 있다. 손비란 수익획득소요비용과 법인에 귀속된 일체의 경제적 손실이다. 본 조 제2항은 손비의 개념은 기업회계와 유사하게 지출비용과 손실로 구분 표현되는데, 실제의 손비성격이나 범위에 있어서나 손비의 인식시기 등에 있어서 세법과 기업회계와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차이로 인해 같은 개념이나 표현을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세무조정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2) 손금의 인식과 측정

① 기업회계상 발생주의의 비용인식기준

현행 기업회계상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용의 인식기준으로서 발생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시기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발생"의 구체적인 시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관련된 대응수익의 인식시점 : 매출원가 등

◎ 원가의 소멸사실이 발생되는 시점 : 임차료, 보험료 등

◎ 원가의 발생시점 또는 대응된 지출의 발생시점 : 광고비·수선비 등

②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개념

본 조는 세법상의 비용의 인식기준, 즉 손금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개념에 의거 이행하여야 할 의무 혹은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채무확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그 중 일부만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당해 비용에 해당하는 채무가 성립되어야 한다.

◎ 당해 채무의 성립으로 구체적인 급부를 계상할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 채무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또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즉, 이를 요약하면 합리적으로 계산된 반대급부 계상해야 할 채무발생액이 구체적으로 성립된 것이 손비가 된다는 것이다.

③ 기업회계상 역사적 원가주의론 손금측정

손비는 수익을 창출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경제적 가치이다. 이는 객관적 희생원인에 따라 계상되는데 명백한 기준과 근거로 희생금액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으로도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명확한 측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계상 비용의 측정은 역사적 원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등에 있어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에 의한 측정을 인정하고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기업회계의 측면에서 볼 때 원가는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검증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취득한 시점의 상대방과의 교환가치를 표시하여 주므로 역사적 원가주의가 지지받아 왔고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④ 기업회계상 현재가치개념의 도입

앞의 역사적 원가주의 개념은 객관적인 측정치를 제공해주는 장점은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변화, 미래에 창출할 자산의 수익력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따라서 역사적 원가주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현재가치 평가의 개념하에서는 자산을 미래의 현금흐름을 유발시키는 원천으로 보아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충당부채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4.8 충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4.9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14.10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이 유사한 국공채이자율에 기업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조정 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현금흐름 자체의 변동위험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4.11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14.12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차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면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⑤ 세법상 의무확정으로서 원가주의 채택

세법도 기업회계를 대부분 존중하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므로 역사적 원가금액자체를 손비로 하고 있다. 즉, 세법은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조세법의 자체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가치개념 및 대체원가개념 등의 다른 개념도 상당부분 원용하고 있다.

3) 회계·세무상 비용·원가의 분류체계

① 발생원천별 분류대응표시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손익계산서는 특정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발생 및 실현수익도 체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비용도 그것의 발생원천, 즉 기업의 어떠한 경영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인가 하는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매출총손익을 위해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원가(제조원가 개념 포함),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 경상항목인 영업외비용, 임시적 항목인 특별손실 등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는바, 세무상으로도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② 매출원가

이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 즉 매출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비된 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당기 중에 판매한 상품의 매입원가나 제품의 제조원가 및 재고자산의 소비원가 또는 공사원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기업회계상 원가·비용 규정

원가·비용 및 수익비용 대응개념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는 중요항목을 예시 열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반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2.45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매출액
(2) 매출원가
(3) 매출총손익
(4) 판매비와관리비
(5) 영업손익

⑹ 영업외수익
⑺ 영업외비용
⑻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⑼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⑽ 계속사업손익
⑾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⑿ 당기순손익

2.46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47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48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49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2.50 판매비와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2.51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2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3 계속사업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

2.54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계속사업손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이다.

2.55 중단사업손익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보고하고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때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손익계산서의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2.56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4) 손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 출자의 환급 · 잉여금의 처분 및 기타 항목

①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은 유상감자의 방법을 통해 법인의 구성원인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당초의 출자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는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익금의 항목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손금의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자본의 감소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전 등의 가액은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의제배당액에 해당되고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된다. 자본의 환급이나 잉여금의 처분이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세무회계상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② 잉여금의 개념 구분과 종류

자본을 법률적 측면에서 분류할 때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하는데 잉여금이라고 하는 용어는 초기에는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그 후 '법인의 순자산 가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기업의 경영활동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잉여금, 즉 재평가적립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 등도 배당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잉여금은 다

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자본잉여금)과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③ 과세소득 계산후의 순자기자본의 일부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본잉여금은 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고, 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기타의 법정적립금으로 처분하고 나머지는 배당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분한다. 이와 같은 잉여금의 처분은 결산에 의한 손익계산과 법인세액의 계산이 끝난 후의 순자기자본을 일부 혹은 전부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기간손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손금항목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④ 손금제외 기타 항목 · 업무비용 중 손금제외항목

기업회계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이라 할지라도 세무회계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출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했더라도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손금부인하는데, 접대비 · 기부금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등이 있다.

⑤ 특별히 손금반영하는 항목

이미 지출되었지만 손금제외항목이 있는 반면, 수익에 대응하여 지출되지 않았어도 손금으로 보는 항목이 있다. 이들은 미래의 대비 · 예상에 따른 비용인식항목인데 충당금 · 준비금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진 항목들을 미리 손금으로 반영해준다.

5) 각종 손금불산입사항 개요

① 손금산입되는 항목의 유형

본 법 제19조제1항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이라 정의하였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경영활동상 소비된 경제가치라고 정의된다. 회계학상으로는 원가 혹은 비용이라 하나 법인

세법상으로는 손비 또는 손금이라 칭하는데 조세법상의 이러한 손금의 개념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비의 유형에 대해 본 조의 시행령 제19조가 예시 열거하고 있는데 매입상품의 원가(제품원가 또는 완성공사원가를 포함한다), 노동력의 대가인 급료와 임금 및 외부용역비, 여비·교통비·수선비·운임 등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있고, 영업활동외에 발생하는 비용인 지급이자와 잡손실 등이 있는데 비용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ⅰ) 재고자산비용으로서 매매업이면 상품매출원가, 제조업이면 제품제조원가, 건설업이면 공사완성원가 등이 있다. ⅱ) 감가상각비와 수선비 등의 고정자산비용, 각종 이연자산상각비 등의 이연자산비용 등이 있고 ⅲ) 판매비와 관리비·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 등으로 대별된다.

② 손금불산입 항목들 (법 제20조·제21조·제26조 등)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지만 잉여금처분적 성질, 과세대상인 소득의 처분, 국가 행정운영상의 부과금 및 기타 조세목적상 손금부인하거나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차기 이후로 이연하는 것이 손금불산입 항목의 주요 내용이다.

잉여금처분적 성질의 것으로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건설이자의 배당금, 주식할인발행차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지급규정 기준초과 상여금,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및 임원퇴직금의 정관상 한도초과액 등이 있다.

국가 행정운영상의 부과금으로는 각 사업연도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세법에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이다.

기타 조세목적상 부인하는 것으로서 불필요 제세공과금(의무부담 아닌 것, 법령 불이행제재금 등),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이

있다. 이밖에 당기 사업연도에는 부인되나 차기 이후에 손금산입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주세·교통·환경·에너지세의 미납액이 있다. 그리고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불분명 할인이자 등이 부인되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도 당기부인된 후 향후 서서히 손금반영된다.

Ⅱ. 통상적인 비용·손실 및 수익 직접관련 항목

(법 제19조제2항)

① 순자산감소의 손비항목

손비는 손실과 비용의 합성어 개념인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실과 비용 모두를 포괄한다. 발생비용 중 직접 관련성 있는 것 뿐 아니라 간접 관련성 있는 항목도 모두 손비로 포함된다.

② 사업관련성 및 통상적 금액

첫째, 사업관련성·법인이 지출하는 손실이나 비용으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사업관련성이 없다면 손비가 될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직접·간접 관련성있는 것 모두를 포괄한다.

둘째, 일반적 인정의 통상성 혹은 수익과 직접 관련성·사업관련성있는 비용이라도 통상적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행위를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통상성이 없다면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즉, 객관적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일반적으로는 발생되지 않는 비용이라 하여도 수익창출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기업회계기준 제34조도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에의 직접적 대응성을 뜻한다.

Ⅲ. 손비의 범위와 종류 (법 제19조제3항)

① 시행령의 손금의 예시규정 (시행령 제19조)

손금에 대해서는 본 법 제19조제1항이 포괄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다음의 시행령 제19조는 거래의 유형별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9조제20호는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도 손비로 규정하여 열거되지 않았어도 법인의 부담이면 모두 손비로 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2012. 2. 2 개정)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010. 3. 15 개정)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2006. 2. 9 개정)
   가. 「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2011. 1. 25 개정)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10. 12. 7 개정)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9. 2. 4 개정)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012. 2. 2 개정)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10. 2. 18 개정)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8. 2. 22 개정)

1. 일반적인 원가 및 비용

1) 원가의 매입가액 · 공사원가 및 부대비용 (시행령 제19조제1호)

① 매입가액과 매입부대비용 및 매출원가의 범위

본 조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도 손금항목으로 예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항목은 매출원가 혹은 제조원가 개념이다.

그러나 매입에누리받은 금액, 매입할인받은 금액 등은 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 이들을 차감한 잔액만 매입원가로 반영한다. 즉, 순액주의로 매입원가 기록, 세무상 반영된다.

② 기업회계상의 매출원가규정

매출원가는 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정기간중에 판매된 상품·제품에 대한 매입원가나 제조원가 또는 용역원가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원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순액주의방법이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2.48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실2.8 매출원가는 기초제품(또는 상품)재고액에 당기제품제조원가(또는 당기상품매입액)를 가산하고 기말제품(또는 상품)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문단 2.48)

실2.9 문단 실2.8의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할인,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문단 2.48)

실2.10 제품이나 상품에 대하여 생산, 판매 또는 매입 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원가의 계산에 반영한다. (문단 2.48)

③ 제조업의 매출원가계산

제조업은 외부로부터 원료 및 반제품 등과 같이 소비자가 직접 소비할 수 없는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제조·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으로 제조기업의 매출원가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 제품매출원가=기초제품재고액+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제품재고액

이와 같이 제조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원칙적으로 당기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당기 총 제조비용)에 기초재공품재고액을 가산하고 여기에서 기말재공품재고액 및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제조업의 회계처리상 특징은 원가계산을 좀 더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로 월차결산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즉, 매월의 제품제조원가(제조계정에서 계산됨)를 제품계정에 대체하고, 특별히 매출원가계정을 설정하여 당월 중에 매출한 제품의 원가를 제품계정으로부터 대체한 다음 이를 다시 월차손익계정을 설정하여 그 차변에 대체함으로써 당월의 제품매출수익과 대응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제조업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기업내부의 경영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계처리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의 작성은 월차결산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연도말에는 그 회계연도중에 이루어진 제품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품의 매출액 이외에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생기는 반제품,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매출액 발생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합계액만을 표시하고 부속명세서로서 매출액명세서와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반제품 등의 매출액은 그 금액의 크기 여하에 따라 표시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정면에서는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매출액을 구분표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출원가도 구분표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④ 상품매매업의 매출원가

상품매매업은 외부로부터 완성된 재화·용역을 구입하여 특별한 가공이나 제조과정이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이므로 이의 매출원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 상품매출원가=기초상품 재고액+당기상품 순매입액-기말상품 재고액

위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매매업에 있어서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과 당기상품 순매입액의 합계액, 즉 판매가능 상품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당기상품 순매입액은 당기상품 총매입액으로부터 매입에누리 및 매입환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한편, 매입에누리에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감액하는 매입장려금을 포함한다.

당기상품 총매입액은 송장상의 가격에 상품매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운임, 보관료, 검사료 등의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입운임이나 매입보관비 중에서 매입 상품별로 배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당해 비용을 매출상품과 기말재고상품에 나누어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매입액의 부가항목으로서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고, 손익계산서에는 그 전액을 당기의 매출원가에 가산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하여 판매, 생산 또는 매입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증감액이 있는 경우와 관세환급금 등 기타 매출원가항목으로 부가 또는 차감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의 방법에 준하여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입할인(현금할인)은 당기상품 총매입액의 차감항목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영업외수익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상품매매업에 있어서 매출원가의 회계처리방법은 매입계정에서 산출하는 방법과 별도의 매출원가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방법은 실무상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⑤ 원가와 수익의 이론적 대응

모든 수익은 법인의 용역잠재력인 자산이 소모됨으로써 창출되는데 자산의 소모 중 가장 큰 것이 매출원가이다.

매출원가는 법인의 장부에 기장된 내용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가 장부외로 처리되었다면 매출누락을 익금에 반영하는 대신, 대응원가로서 부외원가상당액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2) 판매한 상품 · 제품의 부대비용 (시행령 제19조제1호)

① 판매부대비용의 포괄적 범위와 사회통념상 금액

판매한 상품 · 제품의 부대비용은 대부분 판매비 · 관리비라는 개념으로 손금이 된다. 이러한 판매부대비용은 매출에 관련해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여 매출로 계상한 시기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 · 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된다.

다음 시행규칙은 부당행위 부인적용 이외에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 거래의 기업회계관행상 계상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출원인이나 요건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종전에는 매출할인 등에 대해 사전약정을 필요로 했으나 95년부터는 지급사유의 타당성이 있다면 사전약정이 없어도 손금산입한다고 바뀌었다.

② 판매부대비용의 유형

판매 등의 부대비용	• 판매수수료, 지급수수료 • 운반비 및 보관료 • 광고선전비 • 기타의 부수경비 •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 판매장려금, 사은품 • 경품, 조건부 지급 등의 실제지급액

③ 기업회계상 매출에누리·환입·매출할인은 총매출액에서 차감

매출에누리란 매출품의 수량부족, 품질불량, 파손 등의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매출할인은 거래미수금을 일정기일전에 수취시 깍아주는 금액이다. 종전의 기업회계에서는 매출에누리와 환입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매출할인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99년부터는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 모두를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액으로 순액반영하도록 개정하였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본 법 적용상 이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0. 4. 30 개정)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4. 30 개정)

④ 매출할인의 범위 및 요건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약정된 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부터 그 약정된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할인하여 주는 것이다.

이밖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어음결제가 관습화되어 있을 때 어음대신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에 특별히 매출대금의 일부를 차감해 주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매출할인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판매자가 가능한 한 운영자금회전을 원활히 하고 동시에 매출채권의 대손위험을 가급적 적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금융비용의 성격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초 매출액 확정시에도 회수기간을 감안한 이자 해당액을 매출액에 반영되는데, 이의 감액사항이라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99년부터의 회계처리방법이다.

매출할인의 경우는 판매시점에서 지급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우므로 약정에 의한 지급일 또는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한다.

또한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는 상환청구권부여 여부(배서의무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를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로 처리한 경우는 그 할인액을 매각손실로 보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3). 상품 · 제품의 보관료 · 운반비 ·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

① 판매한 상품 · 제품의 보관료 · 포장비 · 운반비 등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보관 · 포장 및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손금으로 반영한다. 즉,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을 직접 제조 및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아니지만 구매자에게 인도되기까지 소요되는 판매간접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② 판매장려금의 의의

판매장려금이란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금액이나 일정량 이상의 거래를 한 매

출처에 대하여 장려의 뜻으로 일정률에 의하여 매출대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은 판매장려금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에는 매출에누리에 포함시켜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2.46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 판매부대비용 · 판매장려금의 범위

판매장려금은 거래조건상의 지급하거나 교부하는 현금 및 현물을 모두 포괄하는데, 예를 들어 판매수수료, 수탁자에 대한 지급수수료, 고객에 대한 대가포함 증정품, 시설이용시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판매촉진목적상의 경품부판매 실시시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이 해당된다.

④ 판매장려금과 접대비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조건에 관계없이 손금이 되나 지출의 임의성이 있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 않고 사실판단에 따라 접대비로 볼 수 있다.

종전에는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금품의 가액이나 사전약정에 의한 것이라도 사전약정범위액을 초과한 금액 및 약정내용과 관계없이 특정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등 이러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계산액의 범위내에서만 손금인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사전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광범위한 판매촉진행위에 관련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⑤ 사업상 증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판매장려금의 지급을 상품 또는 제품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해 자가공급 중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의거 단순증여라면 접대비계정으로 하고, 판매장려금의 일종이면 손금이 된다.

사업상 증여의 기본적 성질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 접대비 혹은 기부금 등으로 구분되므로 사전약정에 의한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해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매출세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이며 사전약정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당해 매출세액도 접대비에 해당되어 한도액 계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⑥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판정시 접대비간주금액 계산 사례

이를 사례로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구입원가 2,000,000원 판매가액 3,000,000원 상당의 구입상품을 제공하면 판매장려금은 원가로 처리하면 되므로(매입세액공제 → 매출세액과세)

• 외부구입시	(차)	상 품	2,000,000	(대)	현금예금	2,2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		(매입세액공제됨)	
• 사업상 증여시	(차)	판매장려금	2,300,000	(대)	상 품	2,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한 2,300,000원이 법인손금이 된다.

○ 만일 접대비로 처리된다면 접대비는 판매시가로 반영하여 회계처리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 매출세액 과세 안함)

불외부구입시	(차)	상품	2,000,000	(대)	현금예금	2,200,000
		상품(부가세)	200,000		(매입세액 공제 안됨)	
불사업상 증여시	(차)	접대비	3,000,000	(대)	상 품	2,200,000
					상품판매이익	800,000

으로 회계처리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는 시가 3,000,000원이 접대비로 되어 접대비한도 시부인계산된다. 접대비로 처리되면, 총시가상당액

으로 평가증하여 한도계산되므로 여러모로 불리하다.

⑦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된 판매장려금은 그 상품·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장려금의 성격상 당해 지급금액이 판매가액 또는 판매수량에 따라 결정되고 그 지급기준이 거래상대방에게 서면계약 통지 등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 일반적이므로 각 사업연도말 현재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할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출할인은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그 지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손금의 인식시기에 있어 판매장려금의 상호간권리의무가 매출할인 보다 먼저 확정되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은 발생주의로, 매출할인은 의미시점으로 손금반영한다.

⑧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

판매장려금은 지급자 입장에서는 손금에 산입되나, 수취자 입장에서는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판매장려금지급에 대한 수익 등의 세원 포착을 위해 매 1년마다 다음연도 3월말까지 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였으나 판매장려금 지급자료 수집업무가 폐지(국세청 법인세과 업무지시)되어 관련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⑨ **판매수당**

제품 또는 상품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도 영업행위자의 의욕을 높여 판매를 촉진시키는 직간접비용으로 보아 사전에 약정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반영한다.

4)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시행령 제19조제2호)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손비로 계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희생된 소멸원가이기 때문이다.

이는 감가상각자산이나 비상각자산 모두에 적용되는데 감가상각적용대상 자산인 경우는 상각후의 장부잔액이 양도가액의 소멸원가이다.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이나 시인부족액은 각 자산별 장부잔액에 가감되어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5) 광고선전비 및 기타 판촉비

① 광고선전비의 범위 및 타비용과의 구분

광고선전비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 즉 일반 대중에 대한 선전적 효과를 의도하여 상품·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은 판매촉진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이며 광고와 선전은 엄밀하게는 별도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광고활동은 주로 인쇄매체에 의한 판매술로 생각되고 있으며 선전활동은 주로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두가지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광고선전비라고 칭한다.

법인세법상 광고선전비는 광고의 내용이나 범위 및 그 손금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판매에 부수되는 경상적 비용으로서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 즉,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나 기부금과 같이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법인의 발생비용 중에는 성격이 불분명한 것도 있는데 지출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지 또는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의 범위액이 달라지므로 이들의 구별이 필요하다.

②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은 당해 비용의 지출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상품·제품·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도 그 지출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그 지출대상을 판매처,

매입처 기타 사업과 관련있는 특정의 자로만 제한하는 경우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여기서 불특정다수인이란 광고목적상의 자사상품의 최종소비자 뿐만 아니라 잠재고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③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사례

◎ 제조회사가 자기의 상표나 상호가 표시된 광고선전용 물품을 대리점·외판원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일반고객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구분하나, 자기의 상품이나 제품 등을 다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기로 한 특정 거래처만을 상대로 간판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간판 등을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회수하여 본래의 목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및 관리유지비 상당액에 한한다)에도 또한 같다.

◎ 산업시찰·견학 목적으로 내방한 방문객에게 자사제품의 시음·시식 및 기타 음식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해당 법인의 상호나 상표가 표시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구분한다.

◎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등도 불특정 다수인에 기증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바, 달력·수첩·부채·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광고선전 범위를 넘어선 지출, 자사제품판매와 관련없는 품목 등의 제공이나 배포할 수량이 통상의 수량을 넘고 특정다수인에게만 배포된다면 이는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

◎ 자기상품구입자 중 몇 명을 추첨형식 등을 통하여 해외여행을 시켜 줄 경우 등과 같이 광고선전의 방법이 고객을 위한 접대의 성격을 띤 경우 이를 광고선전비로 볼 것인가 또는 접대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해외여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함으로써 특정인을 위한 접대의 성격도 있지만 원래부터 상품구입자라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사상품의 판촉을 꾀하였기 때문에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보아 광고선전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④ 판매장려금과 광고선전비의 구분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증대를 위해 자기제품을 매입한 특정의 거래처에만 지급하는 것인 반면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이건 비거래처이건 간에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다.

이를 대비하여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특 정 여 부
판 매 장 려 금	특정된 거래처, 고객
광 고 선 전 비	불특정다수(거래처, 비거래처)

⑤ 기부금과 광고선전비의 구분

광고선전비와 기부금의 구분은 당해 지출이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인 반면 기부금은 기업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대 가	대 상	업 무 관 련 성
기 부 금	무 상	특 정	무관함(간접관련)
광 고 선 전 비	무 상	불 특 정	직접 관련됨

⑥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시기

기업회계에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기간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비용은 실현된 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것을 계상하여야 한다. 광고선전비는 광고효과로 인한 수익발생시기와 이론적으로 대응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다. 따라서 광고선전 실시시기에 비용인식함이 타당하다.

⑦ 권리·의무 확정기준으로 손금산입

본 법상 광고선전비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시점을 손금귀속시기로 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

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가 되었다면 세무상 그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⑧ 공동광고선전비의 분할 및 손금산입

광고선전비는 광고주가 부담할 비용금액이 원칙이지만, 공동광고를 행하고 그 비용분담에 관하여 상호간 약정을 한 경우는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배분비율로 손금산입한다.

따라서 동일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수개의 법인이 동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동 판매회사가 매입한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동 제품의 제조회사명을 밝혀 선전하고 그 광고선전비를 판매회사가 전액 지출한 경우에 동 광고선전비는 판매회사와 제조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동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측의 손금으로 보게 된다.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비를 그룹내의 일부사가 전액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즉, 매출액비율 등으로 적정배분하여야 손금처리된다.

공동부담과 관련하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제작한 시설물 등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각자의 부담분(매출액 비율 등)에 따라 감가상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⑨ 프로야구단과 광고선전비 손금산입 방법

프로야구가 대기업 그룹차원에서 대외홍보 및 광고의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야구단에 직접·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원금을 교부하면 지출한 금액 중 광고선전비 성격을 갖는 부분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또한 사전약정에 의거 기업지원금의 익금산입 계상전의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법인은 당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구단의 결손금은 동 지원금을 익금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기타의 판매부대비용 등

판매부대비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판매촉진 및 수익창출을 위해 기여하였거나 필수적으로 소모된다고 보는 것은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경품·견본비·샘플비·무료기증·부가음식 등이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된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이 된다.

2. 업무관련 인건비용

1) 제반 인건비 (시행령 제19조제3호)

(1) 인건비의 개념과 범위

① 인건비의 개념

본 항은 손비항목의 예시적 열거사항 중의 하나로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인건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인건비는 말그대로 법인의 제반 활동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노력의 보상적 대가를 총칭한다. 일반 관념상 인건비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이 지급하는 금품의 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액은 인건비라고 할 수 없다.

즉, 법인의 업무와 관계가 없거나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제공하는 근로용역의 대가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인건비로 볼 수 없고 기타 다른 관련 비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근로의 대가인 인건비의 범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가액인 인건비는 근로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대가관계가 있어도 근로제공 상당가액의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은 보수의 과대액으로서 해당액은 인건비가 되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임원급여가 일반 사회통념상의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당해 초과금액은 인건비로서의 손금이 인정되지 않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등으로 상여처리한다. 사용인의 인건비도 근로기여도나 대응관련 초과액은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된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자기의 가처분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근로하는데 근로대가로 지급된 경제적 이익은 근로제공자에게 실제 귀속되어야 한다. 근로제공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지급금액이 법인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 편의를 도모키 위한 것일 경우 이러한 가액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인건비가 아니다. 즉, 법인의 종업원을 위한 일반적인 근무제복 및 특수작업장용 작업피복·병원제복·실험실 위생복 등의 가액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수행 실제비용이 된다.

③ 인건비의 유형과 범위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보상 혹은 근로대상적 비용이다. 따라서 인건비는 근로로 인해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보수·급료·임금 및 잡급·수당·상여금·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하며 통상적인 지급형태별로는 봉급·상여금 및 퇴직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봉급적 성질의 인건비

봉급적 성질의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에 대하여 정상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본래적 근로의 대가인데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된 급여를 말한다. 봉급적 성질의 급여는 근로의 제공정도에 따라 당연히 보수청구권이 원천적으로 발생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나 법인의 지급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가 확정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러한 급여는 급여·임금·보수·수당 등의 명칭으로 통칭되나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손금산입함이 원칙이다.

⑤ 상여적인 인건비

상여적 성질의 인건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퇴직급여 이외에 성과나 실적 등에 의거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충적 급여를 말한다. 따라서 상여의 본래 의미는 법인의 소득계산 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므로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이익배분의 성질이 있다. 이와 같이 이익배분적 성격의 상여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명칭만 상

여일 뿐 그 실질내용은 정규급여의 일부를 형태나 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여에 대하여는 세무상의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이익배분의 성질이라면 손금산입이 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손금산입이 용인된다.

⑥ 퇴직급여적 인건비

퇴직급여적 성질의 인건비에는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일시적·사후적 또는 임시적 성질의 급여로서의 퇴직금과 퇴직금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으로 정하여진 지급액과는 별도로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이 있다.

퇴직금은 상여금과는 달리 법인의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따라서 기업회계상 그 발생액을 반드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 퇴직 이전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법정한도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퇴직위로금이나 공로금도 과다한 지급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한 법인의 손비로 인정된다.

⑦ 근로자·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비용인정여부와 과세여부

일반적으로 법인소속임직원의 인건비는 모두 손금산입된다. 일반개념의 인건비에 대해 초과부담지출 과다보수 등과 같이 세무상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없는 금액은 손금산입된다. 기업근로자 등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법인의 손비인정여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수 령 자	법인세법상 규정	소득세법상 과세방법
봉 급 적 성 질 (급 여 · 보 수 · 임금)	사용인	손금산입(급여·상여·성과급 모두)	근로소득과세
	상근임원	손금산입	근로소득과세
	비상근임원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소득과세도 가능함.

	노무출자사원	손금불산입(노무자체가 출자이므로 배당으로 보기 때문임)	배당소득과세
	신용출자사원	손금산입	근로소득과세
상여금적성질 (특별상여)	사용인	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근로소득과세
	비출자임원	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근로소득과세
	출자임원 (주주, 사원, 임원)	•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범위내의 상여금(손금산입) • 지급기준초과 상여금(손금불산입) • 이익처분상의 상여금(손금불산입)	일정액은 근로소득,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소득과세함.
퇴직금적성질 (퇴직금·퇴직위로금, 현실적 퇴직·해고수당)	사용인	전액 손금산입, 퇴직금 중간정산액도 비용인정	퇴직소득과세
	임원(출자임원,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액 범위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상 금액 중 큰 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초과액은 손금부인 2.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총급여액(손금부인상여금 제외)의 10%에 근속연수(1년미만은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3.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액도 충당금에서 감액처리하고 손금산입함.	• 퇴직금중간정산액·직원의 퇴직소득으로 비용반영됨. • 99년부터 임원도 퇴직금중간정산가능(비용처리)·단,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퇴직금 없어지는 조건임. • 규정범위내 금액은 퇴직소득과세, 초과액은 근로소득과세 • 조기퇴직금(ERP)도 규정에 있는 금액은 퇴직소득, 규정없는 임의성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2) 임직원의 인건비

① 사용인의 범위와 인건비의 범위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인건비는 전액 손금산입된다. 임원의 급여도 손금산입된다.

세법상으로는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용인 이외에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자기의 사업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한 자가 아니고 당해 법인의 이익에 대한 배분권이 없어 임원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인과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임원 상여금도 법인의 비용이긴 하지만 무조건 손금산입되는 것이 아니고 정관·주주총회·이사회 등의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범위내 금액은 손금인정하면서 초과금액은 일종의 임의적 지급으로 보아 손금부인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이건 비상장법인이건간에 일부라도 주식이나 지분이 있으면서 실질적인 임원이라면 모두 상여금 지급기준의 제정범위에 포함되고 주총 등이나 위임된 기관의 결정에 따른 최고한도 범위내 금액내에서 손금인정된다.

② 사용인 및 임원의 급여

기업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및 제수당은 사용인이 기업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생계비·보조금·부임수당·보험료·교육비보조 등도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임원급여도 손금산입된다. 그러므로 건설업무 또는 제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그 사용인의 급료와 제수당이 고정자산의 원가나 기말재고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물론 기말재고자산에 반영되어도 매출원가계산 논리상 손금산입된다.

③ 사용인 급여의 사례

이밖에 사용인의 급여로 보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기업이 휴업기간중에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인건비로서 손금산입됨.

◎ 사규 등에 의하여 종업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며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봄.

④ 사용인의 상여금

상여금이란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되는 급료·임금 이외에 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것 또는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급여액을 말한다. 상여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임금후지급설·급료추가지급설·이익분배설 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상여금은 그 지급과정의 상황,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치, 수급자의 의식상태 등으로 보아 급료·임금의 일부로서 정착되어 왔으므로 급료추가지급설이 유력한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IMF후 연봉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익분배설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본 법 제20조제1호는 잉여금처분을 손비계상해도 손금산입되지 않으나, 특정한 성과급은 손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시행령은 잉여분처분 손비계상 성과급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성과급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방법의 지급액,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사주조합 경유이익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이익,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산입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삭 제 (99. 12. 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

음 각 목의 금액 (2010. 2. 18 개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009. 2. 4 개정)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 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⑤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

상여금도 급여의 일종이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상여금지급의무와 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한다.

세무행정상으로는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실제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말에 미지급 계상한 것으로서 그 법인의 사규상 상여의 계산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내부결재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⑥ 상여금의 기간대응경비

오늘날에 있어서 사용인의 상여금은 이익의 분여적 성격이 아니고 보충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사용인에게 지급할 연간 상여금을 추산하여 매월 비용배부를 하는 것이 소득금액계산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그 직원들에게 연간 월기본급여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지급하여 왔다면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출하는 수당적 성질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 87누289, 87. 10. 13)고 판결하고 있다. 사용인의 상여금은 적법한 이익처분절차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에

대한 대응비용·원가로 손금인정되므로 그 초과부분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총 등에 규정된 지급범위내 금액만을 손금인정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3) 임직원의 퇴직금

① 퇴직금의 범위

사용인의 퇴직사유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금지급규정상 많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 손금산입한다(임원의 퇴직금도 같은 기준으로 손금산입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손금용인가능금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하는데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최소액이 계산된다.

퇴직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있어서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세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인뿐 아니라 임원 등도 포함된다.

③ 사용인 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 :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시점

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임직원이 실제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이다. 여기

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종속적인 고용관계의 종결을 뜻한다.

3. 자산관련 제반비용

1) 고정자산의 수선비 (시행령 제19조제4호)

① 수선비의 의의 및 성질

건물·기계장비·차량운반구 등의 유형고정자산이 사용도중에 어떤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그 기술적 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복구공작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선비라고 한다.

이러한 수선비를 세무회계나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정자산이 사용기간 중에 경상적으로 수선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이 내용연수 산정에 감안되었다는 논리이므로 당초 예상했던 정도의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부분은 매기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 지출의 효익이 차기 이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출인 '자본적 지출'과 구별되는데 자본적 지출경비는 당기의 손비로 인정되지 않고 감가상각되어 손금산입된다.

한편 수선비는 수선시점에서 계상하는 경우와 미리 장래의 수선을 예측하여 추정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수선비를 미리 추정하여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과목으로 부채의 성질을 갖는 수선충당금 계정을 설정하게 되는데 세법상으로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하여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였었으나 법인간 과세형평을 위해 98년부터 삭제하였다.

② 원상복구 수선비의 요건과 지출형태

당기 지출시 손금산입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지출이어야 하므로 당초 능력을 유지하는 것 이상이면 수선비가 아니다. 즉, 유형고정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수선한 자산의 사용가능기간(내용연수)을 연장하지 않고 또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수선으로서 단지 파손·고장 등의 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 지출형태로는 일상적인 점검조정, 소모부품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적 유지비, 파손부분의 대체 등에 지출되는 부분적 대체 보상비 등을 들 수 있다.

본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자본적 지출이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당기비용처리된다. 수익적 지출의 형태로서,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자동차의 타이어 튜우브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등을 예시하고 있다. 본 법 제23조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서 자세히 해설하였다.

2)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행령 제19조제5호)

① 감가상각비의 원가배분손금산입

법인의 수익창출과정에서 재고자산이나 유동자산은 당기에 외부에 판매되거나 유출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반면에 고정자산은 일단 총액이 자산으로 계상 반영된 후 내용연수기간에 걸쳐 가치감소·사용 진부화에 따라 정규적 감가상각방법으로 서서히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도 세무상 손금산입된다. 그러나 한도초과액은 손금부인된 후 향후에 서서히 인정된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범위에 대해서는 본법 제23조 해설을 참고한다.

3) 시가미달 고정자산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

① 시가미달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정상시가를 초과한 장부반영차액(=장부반영액⊖정상시가 장부반영액≧시가인 경우)은 거래부인하며 손금불산입처리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상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즉 장부반영액<시가인 경우임)로써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시

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액에 대한 적정감가상각비를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계상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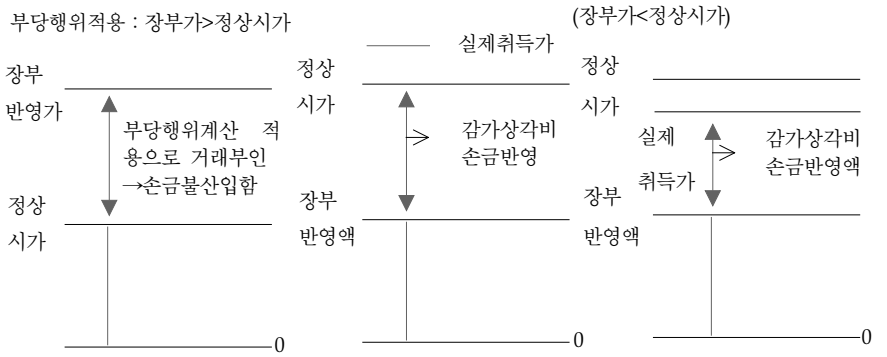

4) 자산의 임차료 (시행령 제19조제6호)

① 임차료의 당기손금산입

임차료는 타인의 자산을 사용·이용함에 따라 지불하는 용역비용인데, 이 또한 업무관련소요경비이므로 손금산입된다.

그러나 사업연도말 현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차료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실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임차료 상당액을 손금산입한다.

② 임차료와 임차료 유사비용의 포괄

세법상의 임차료는 실질적으로 임차료의 성격을 띠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기료나 수도료도 포함된다.

이밖에 건물소유주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면 명목은 보험료이나 실제로 임차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금산입되는 임차료로 봄이 타당하다.

③ 토지 사용 · 수익시 신축건물가액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에서 타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 당해 건축물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여기서 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용기간이 확정되지 않으면 당해 건물의 신고내용연수동안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한다.

5) 자산의 리스비용

(1) 리스거래의 의의 및 범위

① 리스거래의 개념과 범위

리스(Lease)란 리스자산대여자(Lessor, 이하 리스제공자)와 리스자산사용자(Lessee, 이하 리스이용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리스제공자 소유의 특정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경제거래를 말한다.

리스제공자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리스이용자'라 함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특정물건을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리스거래의 장점

리스는 자산을 직접 구입하는데 생기는 일시적인 거액의 자금수요 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들 수 있다.

◎ 자산을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서 리스의 경우는 소액의 자금차입(리스료)으로 100%의 자금조달이 보증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차입금을 조달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자산을 리스함으로써 재무제표상 재무구조가 양호하게 표시되어 자금차입능력에 유리하다.

◎ 설비대체의 경우 자산구입보다 리스가 용이하다.

◎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료를 지불함으로써 상각자산까지도 기간비용으로 계상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따라서 세제상 유리하다.

◎ 다른 채무계약보다는 계약상의 융통성이 있다.

◎ 첨단산업의 신속한 변화와 진부화에 따른 위험을 방지케 하여 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위험을 리스회사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③ 리스거래의 단점

그러나 리스거래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 리스이용자가 지불하는 리스료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그 가격이 다소 높다. 그 이유로는 당해 리스료 중에 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외에도 관행상 리스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운송료, 제세공과금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 운용리스의 경우 인플레가 심한 경우 자산 소유에 따르는 자본이득의 기회를 상실한다.

◎ 리스는 리스이용자에게 사용권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리스이용자에게 소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④ 리스거래의 일반적 분류방법

리스거래는 리스거래의 당사자에 따라 그리고 어떤 리스거래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리스거래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리스거래를 일반적으로 정확히 분류함이 선결요건인데 리스거래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대별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스]규정은 리스의 분류에 있어서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 중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모두 운용리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리스거래의 실질적 계약해지조건의 예로서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리스물건의 염가매수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 차지여부,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공정가의 대부분 경우 등이 있다.

⑤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이용자는 이용만하면서 이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이다. 즉,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용하면서 임대료·이용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⑥ 금융리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리스제공자가 구입대금을 장기간에 걸쳐준 융자·분할지급 등의 금융행위를 하여 준다는 개념의 리스이다. 따라서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실질적 소유·관리하에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장기금융지원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래가 된다.

⑦ 세법과 기업회계상의 리스의 구분기준

세법상으로도 리스물건의 이전계약, 염가구매선택권 부여 및 장기리스계약인 경우는 금융리스로 보며 나머지는 운용리스로 보는데 기업회계기준서의 기업회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러한 금융리스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해 리스거래는 금융리스로 세무상 인식된다. 기업회계기준 개념상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기준이 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 스】

13.6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2)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반영과 세무처리

① 금융리스수익의 익금산입시기

금융리스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수익인식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에 따른다.

최소리스료를 금융리스채권의 원금상환부분과 금융리스이자 수익으로 구분하여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며 원금은 채권의 회수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 스】**

13.21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13.22 금융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제공자의 투자와 용역에 대한 회수와 보상으로서 채권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13.23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13.24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라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을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리스실행일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실13.25 금융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실13.24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사례

이자율법이란 매리스료 지급기간 초일 현재의 리스채권 잔액에 대하여 매리스료 지급기간마다 수익율이 항상 일정하도록 이자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자상당액의 익금산입액을 위한 이자율법의 계산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 례】

○ 리스료 총액 : 20,000,000원 (매년 4,000,000원씩 5회 후불지불)

○ 리스자산 취득가액 : 15,163,160원

○ 리스이자율 : 연 10%, 리스기간 : 5년

년	㉮ 매년 리스료	㉯ 리스이자상당액	㉰ 원금상환액	㉱ 장부상리스채권잔액
0	—	—	—	15,163,160
1	4,000,000	1,516,316	2,483,684	12,679,476
2	4,000,000	1,267,947	2,732,053	9,947,423
3	4,000,000	994,742	3,005,258	6,942,165
4	4,000,000	694,216	3,305,784	3,636,381
5	4,000,000	363,619	3,636,381	0
계	20,000,000	4,836,840	15,163,160	

상기 표에서 장부상 매년의 리스채권잔액에 대한 리스이자가 10%로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잔액×10%)

【회계처리】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상기의 계산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 당초 리스자산 취득시 자기자산계상

(차) 선급리스자산 15,163,160 (대) 현금 및 예금 15,163,160

⇨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계약 실행시

처분으로 채권계상

(차) 금융리스채권 15,163,160 (대) 선급리스자산 15,163,160

⇨ 3년째의 리스료 회수약정일의 실제회수시

(차) 현금·예금 4,000,000 (대) 금융리스이자 994,742

금융리스채권 3,005,258

③ 금융리스채권 및 자산의 평가

금융리스계약에서는 리스자산의 경제적 편익과 위험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므로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실행일 현재의 자산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시키고 당해 가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금융리

스채권으로 대체계상한다.

금융리스채권의 계상액에는 리스실행일까지의 매입가액뿐 아니라 매입부대비용 및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이자 등도 포함된다. 만일 금융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외화채권·채무가 있다면 이는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의 당기 손금·익금 손익귀속방법대로 처리한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 스】**

실13.27 외화로 리스료를 수취하는 계약인 경우 금융리스채권금액의 산정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환율에 의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과 금융리스채권과의 차액은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④ 리스채권 대손충당금설정 범위

금융리스제공자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금액은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이 된다.

이밖에 금융리스에서 리스자산가액은 리스이용자의 대차대조표에 이전 계상되므로 리스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적 지출도 발생되지 않고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없으므로 감가상각을 할 필요도 없다.

⑤ 금융리스계약 해지시의 초과회수차액 익금산입

금융리스 계약의 해지에 따라 회수가능한 금액이 금융리스 채권잔액보다 많으면 당해 초과차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면 그 차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 스】**

실13.29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은 리스목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자산과 동일한 과목으로 인식하되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해 리스자산은 해

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그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실13.37 리스계약이 해지되거나 리스기간이 종료된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리스계약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리스계약으로 보아 일반적인 개념하에 리스회계처리하고 당해 리스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리스제공자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⑥ 소유권 양도에 수반하는 손익

리스기간 종료시에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리스기간 중에 염가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금융리스채권 잔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손익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회계 · 세무처리

① 운용리스수익의 익금산입시기

운용리스의 임대인(리스제공자)은 계약상 받을 최소리스료(리스실행일에 계약된 금액)와 조정리스료(리스실행 이후 발생된 변동요인의 증감차액)를 각 연도에 균등배분하여 익금산입하며 최소리스료는 리스기간동안 균등배분한다.

②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의 기업회계상 수익인식시기

최소리스료는 리스기간동안 체감식 · 체증식 혹은 불규칙 등 어떤 형태로 책정되어 있더라도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배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며, 조정리스료는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다음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 스】**

13.26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그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3.27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자산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실13.24 운용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③ **운용리스시 최소리스료·조정리스료의 회계처리 사례**

운용리스의 수익인식과 관련한 리스회사의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 리스료의 회수기일 도래시

(차) 현금예금 ××× (대) 최소리스료 ×××

○ 최소리스료보다 증가되는 차액 발생시

(차) 현금예금 ××× (대) 조정리스료 ×××

○ 최소리스료보다 감소되는 차액 발생시

(차) 조정리스료 ××× (대) 현금예금 ×××

○ 최소리스료의 경우 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의 매회수기일에 균등하게 배분되지 아니한 경우

• 회수약정금액이 균등액을 초과시

(차) 현금예금 ××× (대) 운용리스료 ×××
선수운용리스료 ×××

• 회수약정금액이 균등액에 미달시

(차) 현금예금 ××× (대) 운용리스료 ×××
미수운용리스료 ×××

④ 운용리스자산의 평가와 취득원가 및 대손충당금 등

운용리스자산을 리스제공자가 취득시 취득원가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리스제공자에서 운용리스의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금액은 리스계약상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이다. 운용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리스자산취득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원가에 직접 산입한다. 그러나 그 소요여부가 불분명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로 하지 않고 단기지급이자로 처리한다.

⑤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하지만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제공자(주로 리스회사임)가 감가상각하되,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종전에는 시설대여기간동안의 균등상각방법대로도 감가상각할 수 있었으나 99년부터는 일반 자산내용연수대로 상각한다. 그러나 종전의 리스자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리스기간이나 별도의 내용연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각할 수 있다. 다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⑥ 금융리스자산은 이용자의 고정자산 일반감가상각방법 적용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제공자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제공자가 고유의 내용연수대로 상각반영하지만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자산이므로 리스이용자

(금융리스자산의 소유자)의 고유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등)대로 감가상각한다. 운용리스 자산도 일반 다른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처럼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량비례법 등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감가상각방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⑦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운용리스는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계상하는바,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적용 등은 각 법인의 고유방법대로, 세무상으로는 본 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 손금범위액 계산방법대로 적용한다. 즉, 일반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및「별표 6」중 당해 리스자산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별·자산별 분류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⑧ 운용리스계약의 해지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나 리스보증인에게서 회수가능한 금액은 당해 금액을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미회수된 금액은 주석기재한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 스】

실13.31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리스해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미회수된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4) 리스이용자의 회계·세무처리

① 금융리스방식

① 금융리스에서 감가상각비와 이자의 손금산입

금융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중에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이며 원금상당액은 계상된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한다. 이밖에 리스자산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은 리스개량자산과목으로 계상하여 리스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한다. 그러나 리스자산의 일반 수선비는 발생시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금융리스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감가상각

리스계약상의 최소리스료 총액은 현재가치할인개념에 의거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자산·부채로 계상하며 회사소유의 다른 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 스】

13.13 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13.14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매기의 최소리스료는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13.15 금융리스에서는 매 회계기간에 이자비용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금융리스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추정잔존가치 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실13.43 리스자산의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리스실행일 이후 리스자산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선비(리스이용자의 부담분에 한한다)중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이를 리스개량자산으로 인식한다.

③ 소유권 취득을 위한 지출의 원가계산

리스이용자가 당초 약정에 따라 리스기간 중 염가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소유권 취득에 수반하여 지출된 금액에서 금융리스 부채잔액을 상계하고 남는 잔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일반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당해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적용함).

④ 반환시의 특별손실

리스자산을 리스기간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미상각잔액을 특별손실 등으로 하여 리스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일시에 손금산입한다.

② 운용리스방식

① 운용리스료의 손금산입방법

리스계약상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지급의무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최소리스료 비용은 리스기간동안에 걸쳐 균등배분하여 비용반영하고 손금산입한다. 그러나 조정리스료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 스】

13.19 운용리스에서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실13.24 운용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②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안분계상

임차인이 운용리스자산의 취득가액 일부 부담시 선급비용 계상후 리스기간 동안 안분손금산입한다.

또한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 스】

실13.45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일부부담분만큼 공유지분이 인정될 경우 리스이용자의 부담분은 유형자산 등으로 인식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일부부담분만큼 공유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선급리스료로 회계처리하고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③ 운용리스와 결부된 직접 취득부분의 계상

사업용 자산을 설치함에 있어 시설중 일부는 운용리스방법으로 임차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직접 도급공사방법에 의하여 설치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한 시설은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과는 별도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동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5) 리스 기타 사항(연장 · 해지후 재리스 · 공동리스 등)

① 리스계약 해지 · 종료후 새로운 리스계약

리스계약이 해지된 후 당해 리스물건을 동일인에게 리스방식을 변경하여 리스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리스하면 이를 완전히 새로운 리스계약으로 보아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로 처리한다. 즉, 리스의 분류나 회계처리 및 평가와 손익귀속시기 등에 있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준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리스로 보아 처리한다.

② 리스계약 해지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인 경우 회계처리 사례

리스계약 해지 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방식으로 결정되면 모든 것이 금융리스관련 자산 · 부채로 계정대체된다.

【사례 Ⅰ】

○ 기존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후 새로운 금융리스로 해당하면 리스회사의 취득원가는 새로운 리스계약의 실행일 현재 당해 리스물건의 공정한 평가액으로 하며 그 차액은 당해 연도의 영업손익으로 산입한다. 따라서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신금융리스채권 (실행일 현재 공정한 평가액)	×××	(대)	구금융리스채권	×××
	해지리스자산평가손실 (당기손익)	×××			

○ 기존 운용리스계약의 해지 후 새로운 금융리스로 계약되면 취득원가는 새로운 리스계약의 실행일 현재 당해 리스물건의 공정한 평가액으로 하며 그 차액은 당해 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신금융리스채권 (공정한 평가액)	×××	(대)	운용리스자산 해지리스자산평가이익	××× ×××
	감가상각충당금	×××		(당기손익)	

여기서 공정한 평가액에 대한 정의는 불명확하나 세법상 시가의 개념을 원용하면 된다.

③ 새로운 계약이 운용리스시의 회계처리사례

반대로 리스해지 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운용리스방식으로 결정되면 모든 관련 자산·부채는 운용리스자산·부채로 대체된다.

【사례 Ⅱ】

○ 종전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후 새로운 운용리스계약의 실행시 리스회사의 취득원가는 새로운 리스계약 실행일 현재의 해지된 당해 리스채권잔액이 된다. 다음과 같이 분개처리한다.

(차)	운용리스자산	×××	(대)	금융리스채권	×××

○ 종전 운용리스계약의 해지 후 새로운 운용리스계약의 실행시 리스회사의 취득원가는 새로운 리스계약의 실행일 현재의 해지된 당해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이 된다.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신운용리스자산 ××× (대) 구운용리스자산 ×××
구감가상각충당금 ×××

이론상 운용리스자산으로 대체될 금융리스채권은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한하고 회수기일이 도래되어도 미회수된 금액은 대손요건의 구비여부에 따라 손금산입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는 자산의 미래수익창출능력과는 무관하게 취득원가가 산정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4. 차입금이자 등 금융비용 (시행령 제19조제7호)

① 차입금의 범위와 이자의 손금산입

법인은 사업자금을 타인자본과 자기자본형태로 조달하는데, 자기자본은 자본금·출자금·자본잉여금 등 법인의 주주가 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이며, 이에 대한 자본대가는 배당이나 분배금 등의 명목으로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차입금은 법인과 독립된 외부의 자금원천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인데, 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대가, 즉 지급이자와 할인료 등의 금융비용이 지출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차입금이자라 하는데 합리적 범위내의 금액이라면 전액 손금산입된다.

②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손비인정여부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차입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부채로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에 의거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당해 법인의 손비가 된다.

또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채무명의변경이 아직 실시되지 않아 차입금의 명의인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아직 사업포괄 양도자명의로 되어 있는 부채라 할지라도 양수한 법인의 손비가 된다.

③ 부외부채에 대한 이자불산입

법인장부에 반영된 개인사채의 이자도 채권자가 명백하고 관련 이자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가 분명히 되어 있으면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된다. 즉, 사채이

자가 손금산입되려면 사채이자의 귀속자도 명확하여 원천징수문제나 지급명세서의 제출도 객관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계상된 부외부채액의 상대계정이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서 불분명지출금액이라면 조세법상의 제재적 차원에서 손금에 불산입함이 타당하다.

④ 조건부융자의 최소상환금 초과실시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조건부융자의 경우 최소상환액 이상 금액의 로얄티 및 실시료는 별도구분하여 비용인정한다.

⑤ 대금의 지급지연이자와 조건부이자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물품대금의 확정 후 당해 대금지급지연에 따라 당해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로 인한 이자는 지급이자로 본다. 99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시행령 제48조제11항 개정으로 공급대가 지연이자는 일종의 금융대가로 보고, 공급가액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건설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그 이후에는 손금산입된다. 이밖에 수출품생산집하자금의 이자도 손금산입된다.

⑥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지급이자

원재료매입 등 재고자산취득과 관련되는 지급이자도 금융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며 D/A수입자재이자 및 유전스이자도 금융비용으로 당기 손금이 가능하다.

⑦ 과세형평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차입금이자도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용역잠재력 혹은 세법상 순자산의 감소임에는 틀림없으나 같은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중에서도 차입금의존도가 적은 법인은 손금산입경비가 적어 과세소득이 크게 되고 따라서 납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과세형평차원에서 차입금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을 위해 본 법 제28조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5. 사업상의 경상적 손비

1)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시행령 제19조제8호)

부가가치세액 미수금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되면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회수불능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를 적용받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법인차원에서 불이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회계처리상으로도 채권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매출시

(차)	외상매출금	110	(대)	매 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② 대손세액공제 적용받은 경우

(차)	부가세예수금	10	(대)	외상매출금	10

③ 즉, 대손금으로 자산에서 감액될 금액은 110이 아니고 100만 손금으로 떨어진다(부가세 10은 이미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으므로).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미수된 매출세액도 손금에 포함한다.

2) 자산의 평가차손 (시행령 제19조제9호)

① 취득원가주의의 수정

기업의 모든 자산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구입당시의 원가로 함이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있게 거래쌍방간에 결정되었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당해 자산의 구입 이후 특별한 여건변화나 가격변경요인이 없다면 취득원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제와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특정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인플레이션(물가오름) 상태에 있으므로 가격이 상승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격상승은 회계의 보수주의 개념에 따라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의 익금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반면에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은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으며 기업회계에서도 회계의

보수주의 개념에 의거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본 시행령 규정은 손금의 일종으로서 자산의 평가차손도 인정된다는 일반개념이다. 그러나 본 법 제22조는 특별히 열거한 것 이외에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고 원칙규정하고 있다.

②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종전에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만 손비로 하였으나 급변경제상황이나 진부화 등의 개념을 반영하여 일반자산의 평가차손도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하였다. 자산의 평가차손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이다. 현행 세법상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평가방법 중 저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원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게 되므로 자연히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생기게 된다. 다른 하나는 세법상 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본법 제42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법 제42조【자산 · 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③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혹은 손금불산입판단

이상 두가지 경우는 법인소득 계산상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원가를 시가로 조정하는 회계적 절차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판단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내용 이외의 것으로 자산의 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처리된 거래증빙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본 법 제22조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여 자산평가차손이 손금항목의 일종이지만 원칙적으로 임의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함을 분명히 하였다. 본 호는 이런 취지에서 자산의 평가차손을 손비로 한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제세공과금 (시행령 제19조제10호)

① 제세공과금의 의의

제세와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 세법상의 제세공과금이고 기업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계정에서 처리되고 있는 항목이다. 기업회계상 세금과공과계정은 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와 공공적 지출인 동업조합·상공회의소 등의 각종 공공단체의 부과금 및 벌금·과료·과태료 등 특정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 등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조세공과 가운데 이익의 처분 등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세공과금과 국가에서 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징하는 벌금·과료 및 각종의 가산세와 가산금 및 취득세·등록세 등 자산취득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본 법 제21조가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법령상 의무납부금 아닌 것(즉, 임의적 납부액은 손금불산입), 법령의무불이행·금지·제한위반의 제재부과금" 등만 손금불산입하며 나머지는 모두 손금산입하는 적극적 규정(Positive 방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세공과금은 손금산입되며, 법령의무없이 임의적 공과금은 손금불산입된다.

② 손비로 인정되는 제세의 범위와 유형

세금이란 법률상 강제적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본 법과 같이 법인의 이익·순자산증가에 대한 법인세 등 이외의 모든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 중 법인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총 대가, 영수증발행분 등), 교육세, 증권거래세, 전화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다. 이밖에 지방세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세가 제세라는 계정과목이 된다.

공과금은 공적규정이나 요건에 따라 부담할 금액으로서 법률상 강제는 아니나 기업의 운영을 위해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부담금액이다. 협회비, 동업자조합비 등이 있다.

③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손금산입

취득세·등록세 등은 매매목적이나 고정자산보유 목적의 부동산 모두에 대해 취득부대비용이 되지만, 재산세는 손금산입된다. 그러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거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금액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④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

제세공과금은 발생된 귀속연도에만 대응되는 경비로 손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손금대응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연도는 나중에 추가로 손금반영할 수 없다. 법인의 회계상 제세공과금회계처리의 오류나 지연확정으로 인해 잉여금과 상계(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도 손금산입한다.

4) 사업자 조직단체인 등록조합·협회 등의 회비

(시행령 제19조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조합이나 협회에 대한 회비는 일반회비이건 특별회비이건 회원으로서의 의무금액 및 상호협의 금액은 모두 손금산입된다. 이러한 조합·협회는 법인격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법인격이 없더라도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격도 없으면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조합이나 협회는 일종의 임의단체로서 이들에 대한 회비는

무조건 손금산입되는 것이 아니다.

지출의 성격에 따라 임직원의 개인적 편의금액은 급여, 상여,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업무무관경비, 접대성 경비는 접대비이며, 기부금이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된다.

5) 사업관련 해외시찰·훈련비 (시행령 제19조제14호)

①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의 범위와 손금산입

해외시찰·훈련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고 업무와 관련있다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만 손비로 인정된다. 반면에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관광목적의 여행이라든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이어도 합리적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비용인정하지 않는다고 법 제26조제3호가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 필요인정금액 초과액은 임원·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②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한 여비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인지의 여부에 적절하면 여비로서 전액 손비로, 부적절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등 손비구성항목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구분기준은 여행목적지역·경로·기간 등을 모두 감안하여 판정한다. 즉, 업무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 있으면 손비로 인정된다.

③ 해외여행 동반자 여비의 손금산입여부

임원의 여행동반이 신체장애로 인한 상시보좌동반, 국제회의 배우자 동반 필수요건, 기타 전문기능인(외국어 통역자·전문능력위촉자 등) 동반인 경우는 손비로 인정된다.

④ 업무상 불필요한 여행이 병행된 여비의 안분계산 손금산입

임원 또는 사용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당해 여행과

관련하여 관광여행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나 수익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여행기간에 따라 해외여비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⑤ 법인업무에 직접 관련된 부분은 손금산입

관광여행기간 중에도 법인업무와 관련된 부분의 비용은 손금산입한다. 즉, 임직원의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6. 기타의 업무귀속손비 (시행령 제19조제20호)

1) 기술도입사용료

① 기술사용료의 개념과 손금산입범위

법인은 수익창출을 위해 자체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기 개발된 기술 및 상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로열티 및 사용료를 정액·정비례율 및 기타의 계산방법으로 지급한다.

기술사용료는 경상기술 사용료, 기술사용료 선급액, 고정기술 사용료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경상적 기술사용료는 발생시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만 경상기술료 이외의 별도의 금액인 기술사용료 선급금 금액은 기술제공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초기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제품과의 기간적 대응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기보다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료선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도 선급금 전액을 연구개발비 등으로 계상하여 상각하여야 하므로 계약상의 조건이나 사정변경에 의하여 반환조건이 있다면 이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계약기간동안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하면 된다.

② 경상기술료와 고정기술료의 손금산입방법

일반적으로 경상기술료는 계약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데 경상기술료를 제품의 제조수량에 일정료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라면 제품제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여기서 계약제품의 판매 및 제조수량이 확정된 사업연도 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기간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 손금 및 익금산입한다. 경상기술료의 손금계산방법에 있어서 제품의 순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라 할지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제품제조원가에 해당하므로 당기의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안분하여 계산 손금산입한다. 물론 제조에 관한 기술이 아니고 판매나 경영관리에 관한 기술료라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여 전액 당기 손비로 한다.

경상기술료와 기술료 선급금이 혼합된 계약이 고정기술료 지급방식의 계약인바, 계약상 경상기술료의 선급이 분명하다면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계약기간동안 안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료 선급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상각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정기술료에서 경상분과 선급분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고정기술료 지급액 자체를 지급·발생시 손비로 처리할 수도 있다.

③ 기술료 지급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과의 기술도입 및 용역계약에서 총액을 계약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만 송금하는 계약도 있지만, 순액지급하고 발생되는 세금은 국내의 대가지급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계약도 있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이라면, 당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즉, 순액지급계약인 경우 세금포함 총액이 손금산입된다는 뜻이다. 계산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용료의 과세표준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이 되며 총액 계산된 금액(gross-up)이 비용처리된다.

2) 업무상의 손해배상금

① 손해배상금의 범위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고 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재산적인 보상을 손실보상금이라고 한다.

이처럼 그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양자가 구별되는 것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지급된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모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고 있다.

②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방법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은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당해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본다.

따라서 회사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상비는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도 보지 않는다. 한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제 배상금의 지급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금 지급액은 당해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③ 기타 손해배상적 성질 비용의 손금산입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해배상적 성질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데 모두 확정일자 혹은 결정고지일에 손금산입한다.

◎ 우발적인 공사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보상금
◎ 법인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맨홀사고 배상금
◎ 환경보전법에 의한 공단내 거주자의 피해보상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 외의 보상금지급액 중 합당한 범위내의 금액
◎ 환경보전법상 공단거주자 피해보상비로서 납부하는 부담금
◎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에게 편의시설의 제공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위자료
◎ 상대방의 손실·복구비 등

④ 기타 손비인정항목 등

여러 상황이나 환경에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으로 발생된 관련경비가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되려면 업무수행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7. 특수목적·특수업종의 손비인정

1) 광산업의 채광비·탐광개발비의 손금산입 (시행령 제19조제12호)

광산업의 탐광비와 탐광을 위한 개발비 등도 법인의 손비로 한다.

광산업은 초기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불확실산업이므로 초기탐광비·개발비의 손금산입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생산비는 대응원가로서 당연히 사업연도의 손비이므로 특별히 탐사비와 개발비를 발생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한 것은 장래수익에 대응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연처리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광산업은 광상, 광맥이 발견되기까지는 탐사, 개발을 위한 탐사시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동원한 자금의 금리부담이 과중하고 또한 경제성을 지닌 광맥의 발견은 위험부담이 크므로 초기에 이러한 발생비용을 세무상 손금산입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납세부담을 줄이고 회계의 기본기능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히 보수적으로 공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은 탐광비와 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손비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특정의 지출이 탐광비에 해당되는

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의료업의 무료진료·새마을진료가액 등의 손금산입

(시행령 제19조제13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이나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발생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손비로 산입한다. 또한 의료업의 병원개설허가 조건에 부수하는 무료진료비도 손금산입되는 범위에 포함된다.

3) 무상기증 잉여식품가액의 손금산입 (시행령 제19조제13호의2)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잉여식품을 무상기증하는 경우 그 가액은 발생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으로는 무상기증인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거나 업무무관지출,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이 원칙이지만, 잉여식품의 실제 활용으로 자원낭비를 막고 불우이웃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나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해야 한다.

4) 특별학급·산업체부설학교 운영비 및 맞춤형 교육운영비

(시행령 제19조제15호)

초·중등교육법 등은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비가 법인의 사업관련 직접 경비는 아니지만 본 호는 근로청소년지원 및 산학협동지원목적에서 일반법인의 이러한 특별학급 및 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운영비에는 교원에 대한 인건비, 제반 피복비, 교재비 및 기타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손비로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이다. 또한 학교시설자산투자액도 운영경비로서 감가상각비 방법

(세법상 매년 한도금액계산)으로 손금산입된다.

또한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 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되는 작업교육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현장실습수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업무와 직결되는 것에 관계없이 손금산입으로 추가 규정하였다.

5)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과 자사주 장부가

(시행령 제19조제16호)

법인의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어떤 종류의 법인 금품도 종업원의 복리후생지원 및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의 비용처리행위에 대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기회사주식외의 부동산이나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출연자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한다. 여기서 이러한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는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데, 증자방식에 의하여 자사주를 배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6) 소액미술품의 취득가액 손금산입 (시행령 제19조제17호)

사무실 등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미술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부응하고, 문화예술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소액 미술품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당해 지출액을 당연도 비용으로 처리해도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소액 미술품은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 3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기비용 반영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거래건이 10건이면 1년에 3천만원(=300만원×10)도 당기손금 가능하다.

7) 광고선전 목적의 기증품 (시행령 제19조제18호)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반영한다. 또한 특정인 혹은 특정거래상대방에게만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이라도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증한 물품의 가액이 개당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광고선전 목적을 위한 소액제품 기증은 특정인에 기증하더라도 손비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8)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비용 보전금액 (시행령 제19조제19호)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나 해외모법인(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내국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한 외국법인)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이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을 손비로 인정한다.

손비로 인정하는 주식기준보상금액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등 관련규정은 다음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10. 3. 31 신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

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